#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41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강일・양부남・김남근

허성무 • 한정애 • 김주영

이성유 • 김병기 • 장철민

채현일 의원(10인)

## 제안이유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부실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 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투자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피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 어지지 않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특히 무인가·무등록 금융판매, 허위·과장 광고, 내부자거래 등 불 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시장 신뢰 도 역시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 사를 설립하고자 함.

공사는 기금의 운용을 비롯하여 정부 위탁 업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한편, 투자자보호와 공 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및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공사는 기존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하되,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확보하고자 하였음.

이번 제정안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단순히 민사소송 등 개별적 분쟁 해결에 맡기는 것을 넘어, 공적 구조를 통한 신속하고 제도화된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실질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할 전문기관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고자 함(안 제4조).
- 다. 공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 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투자자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 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공사는 사장 1명,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 관 또는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사. 공사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 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 조).
- 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투자피해보상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 차. 공사의 재원으로 과징금, 벌과금 외에 정부 차입금과 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의 출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카. 공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정부 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타. 공사는 투자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피해보 상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파.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4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정 한 금융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2. "불공정거래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 위를 말한다.
- 3. "금융투자피해"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가 왜곡되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 제1절 통칙

- 제3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 ①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절 운영위원회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한다.
  -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5.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 그 밖에 공사,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운영에 관 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다.
  - 1. 공사의 사장
  -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 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 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5명
    - 가. 금융 또는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 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 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임원 및 직원

-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③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그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5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 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 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파견직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 제19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4절 업무

- 제21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 3.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 4.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2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1. 제21조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8조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 2.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장에게 제23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 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5조(회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6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5항, 제429조

- 의2,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 4. 제3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 5. 제30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6.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의 차입금
- 7.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및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른 벌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정부는 공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투자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채권(이하 "채

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제31조(차입) ①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한국은 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제33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
- 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자문비용 등의 지원
- 3. 투자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캠페인 및 홍보사업
- 4.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 5. 기금의 조성 ·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6.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사업 또는 활동
-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34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 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 제3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7조(보고·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를 심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 제4장 벌칙

-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 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